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

진도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리(폐차)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 고 기 간: 2025년 1월 14일 ~ 2025년 2월 2일(20일간)

2. 강제처리(폐차)일시: 2025. 2. 2. 이후

3. 강제처리 및 보관 장소

- 은광폐차장(강진) :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솔치로 402 (☎061-544-0078)

4. 강제처리(폐차) 대상차량: 아래 내역 참조

5. 유의사항

가. 자동차 소유자(점유자)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해당차량은 **강제처리(폐차)** 됩니다.

나.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형사고발(1년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) 또는 같은 법 제86조·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·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(150만원 이하의 범칙금) 됩니다.

다. 자동차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,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라. 강제처리(폐차)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**공시송달** (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)은 본 공고로 **같음**합니다.

※ 강제처리(폐차)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은 폐기 처분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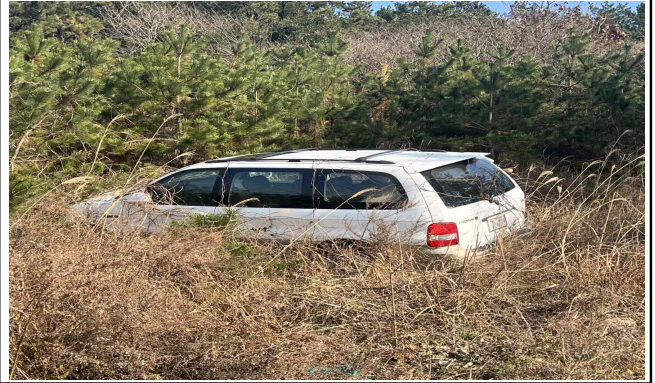
6. 문 의 처: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교통행정팀 ☎(061)540-3495

2025년 1월 14일

진 도 군 수

□ 강제처리(폐차) 대상 자동차 내역

연번	차량번호	차명	소유자	사용본거지주소	방치장소
1	20나6229	카니발II	박*늘	전남 신안군 신의면 안산길 ***-**	전남 진도군 가사도 가사도리 산 374 인근



연번	차량번호	차명	소유자	사용본거지주소	방치장소
1	전남94가 6317	타운너 엘피지	문*보	전남 진도군 의신면 만길안길 *-**	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 2길 30, 옥주공업사 인근



연번	차량번호	차명	소유자	사용본거지주소	방치장소
1	399다 4022	K3	(유**사) 카***엠	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**	전남 진도군 진도읍 왕온로 143
					

연번	차량번호	차명	소유자	사용본거지주소	방치장소
1	04거 2221	코란도C	권*상	전남 무안군 운남면 영해로 **~**	전남 진도군 진도읍 왕온로 143
					